


「2026 대학생 골목상권 마케터즈 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자립화, 경영 환경개선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목적으로 「2026년 대학생 골목상권 마케터즈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께서는 지원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2026년 4월
부산경제진흥원장

1

모집개요

- 사업명 : 「2026 대학생 골목상권 마케터즈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대학생 마케터즈와 골목상권·소상공인의 1:1 매칭을 통한 실질적인 경영환경 개선 및 자립화 도모
- 지원기간 : 2026. 7. ~ 10.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 ※ 최근 2년간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업체 지원 불가 (24, 25년도 참가업체)
- 모집규모 : 개별 소상공인업체 **18개소 모집**
-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 마케팅 활동 지원비(홍보물, 인쇄비 등) : 업체당 60만원
 - ※ 매칭된 마케터즈와 소상공인 협의 후 사용 가능
 - 사업기획, 업체홍보, 환경개선, 정책안내 등
- 제외업종
 - 프랜차이즈 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참고2**

2

프로그램 일정 및 안내

○ 프로그램 일정(안) ※ 아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일정
모집 기간	2026. 4. 30.(목) ~ 5. 22.(금)
매칭 기간	2026. 6. 1.(월) ~ 2026. 6. 12.(금)
매칭 발표	2026. 6. 12.(금)
지원 기간	2026. 7. ~ 10.

○ 지원방법 : 마케터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지원방법 및 매칭방법		비고
소상공인 지원	1) 홈페이지 접속 (www.bu-supporters.com) 2) 소상공인 회원가입(기업 회원으로 가입) 후 업체정보 등록 3) 페이지 상단 → [프로젝트 등록] 작성 완료	소상공인업체 정보 공개기간 별도공지
1:1 매칭	1) 홈페이지 내 소상공인업체 정보 공개 2) 마케터즈가 소상공인·골목상권에 매칭 신청 3) 소상공인·골목상권 대표와 마케터즈 1개팀 매칭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6. 7. ~ 10. ▶ 총 4개월 지원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 마케팅 활동 지원비(홍보물, 인쇄비 등) : 업체당 60만원

※ 매칭된 마케터즈와 소상공인 협의 후 사용 가능

○ 마케터즈 주요 활동지원

- 사업기획 : 점포 스토리텔링 발굴 및 스마트 스토어 입점 안내
- 업체홍보 : 홍보영상·카드뉴스 등 제작 및 배포, 온라인 마케팅 지원
- 환경개선 : 브랜드 및 라벨 등 리뉴얼, 전단지·메뉴판 제작 및 교체 등
- 정책안내 : 부산시 및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 지원

○ 유의사항

[신청 및 선정 관련]

- 동일한 대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함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지원 취소, 지원금(또는 서비스 가치) 환수,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소상공인 모집 지원 정보를 허위 사실로 기재할 경우 향후 부산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의 모든 지원 사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활동 협조 및 이행 의무]

- 활동 기간 내 마케터즈와의 일정 조율 및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마케터즈가 요청하는 자료 제공(사업장 사진, 메뉴 정보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선정된 소상공인의 비협조(연락 두절, 자료 미제공 등)로 인해 마케터즈의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흥원은 지원 대상에서 해당 업체를 제외할 수 있음

[결과물 저작권 및 활용 동의]

- 마케터즈 활동에 따른 결과물(카드뉴스, 이미지, 영상 등)에 대한 저작권 일체는 진흥원에 귀속됨
- 제작된 결과물은 진흥원 공식 SNS, 유튜브 및 기타 온·오프라인 매체에 게시될 수 있으며, 향후 진흥원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마케팅 용도로 수정·보완하여 활용될 수 있음
- 선정된 소상공인은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을 본인의 사업장 홍보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상업적으로 재판매하거나 원본의 의도를 훼손하는 형태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문의

-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 문의처 : ☎ 1833-3665, ✉ ljh3790@bepa.kr

참고1

소상공인의 기준

【소상공인 확인기준】

① 연평균매출액 + ②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기타업종은 5인 미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

업종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소기업기준 (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 기준
A. 농업, 임업, 및 어업		80억원 이하	5명 미만
B. 광업		80억원 이하	10명 미만
C.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11	음료 제조업	120억원 이하
	12	담배 제조업	80억원 이하
	13	섬유제품 제조업	80억원 이하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20억원 이하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0억원 이하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80억원 이하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0억원 이하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0억원 이하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24	1차 금속 제조업	120억원 이하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0억원 이하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80억원 이하	
28	전기장비 제조업	120억원 이하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0억원 이하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20억원 이하	

업 종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소기업기준 (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 기준
C. 제조업	31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80억원 이하	10명 미만
		202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피물 제조업 중 철도차량용 의자제조업에 한정	120억원 이하	
		322 항공기용 부품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제조업에 한정	120억원 이하	
	32 가구 제조업	120억원 이하		
	33 기타 제품 제조업	80억원 이하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0억원 이하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20억원 이하	5명 미만
E. 수도 하수 및 폐물 처리 원료재생업	36 수도업	120억원 이하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0억원 이하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30억원 이하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0억원 이하		
F. 건설업			80억원 이하	10명 미만
G. 도매 및 소매업			50억원 이하	5명 미만
H. 운수 및 창고업			80억원 이하	10명 미만
I.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5명 미만
J. 정보통신업			50억원 이하	
K. 금융 및 보험업			80억원 이하	
L. 부동산업			30억원 이하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P. 교육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참고2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3.12.) (4page 참고)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